201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2014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사전 의결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□ 성주2 일반산업단지 지방채 발행액 : 400억원

○ 기 발행액 : 300억원(2012년 100억원, 2013년 200억원)

○ 2014년도 지방채 발행액 : 100억원

- 한 도 액 : 69억원
- 차입조건 : 3년 거치 5년 상환
- 차 입 처 : 경상북도(지역개발기금, 이율 연 3.0%)

4. 참고사항

가. 2014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 : 의안 참조

나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- 붙임

5. 검토의견

□ 먼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

○ 지방자치법

- 제124조 제1항에서 「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」라고 규정하고 있음

○ 지방재정법

- 제11조 제1항에서 「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」라고 규정하고 있으며

- 제2항에서는 「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」라고 규정하고 있음

○ 지방재정법 시행령

- 제9조에서 지방채 발행 대상을 「공용 · 공공용 시설의 설치,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, 천재 · 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 결함의 보전,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,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, 그 밖의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」등 6개 항목으로 지방채 발행 대상이 극히 제한하며,

- 제10조 1항에서는 「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」라고 규정하고 있음

□ 종합적인 검토의견

○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

- 금번 제출된 「201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총 893억원 중 493억원은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부족재원 400억원은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2012년 100억원, 2013년 200억원은 기 발행했으며, 남은 100억원을 2014년도에 발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차입한 지방채를 2015년도 성주2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상환기간 도래 전에 400억원 전액의 조기 상환계획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군 재정수입 확대, 새로운 일자리 창출, 인구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항구적인 이익이 될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나,

○ 우리군 총 채무액 552억원 중에서 금년도 상환해야할 채무액이19억원(원금 3억원, 이자 16억원)이고, 앞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날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